

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3. 7. 19.> 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즉시	
신청인	참전등록번호		성명	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 , 휴대전화번호:)				
변경구분	☐ 예금계좌 변경			금융기관명	
	☐ 계좌입금으로 변경				
	☐ 압류방지 전용계좌(호국보훈지킴이)로 변경			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	
	☐ 현금지급으로 변경				
변경지급 희망시기					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항,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청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지방보훈청장

보훈지청장 귀하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입금계좌 확인정보(통장 사본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
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변경사항 승인	→	지급
신청인		관할 보훈(지)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		관할 보훈(지)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		관할 보훈(지)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

확인

담당	주무	과장	(지)청장
----	----	----	-------